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□ 총칙(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사건사무 전반의 목적과 인권보호·적법절차 원칙, 수사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조(목적): 규칙의 목적과 사건사무의 적용 범위를 정함
- 제2조(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): 사건사무 처리 시 인권보호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정함
- 제3조(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): 수사관의 사법경찰관·사법경찰리 직무,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 효과

-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의 기본 가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 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 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 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, 수사 규정을 참고함

□ 사건의 수리(제4조부터 제14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입건전조사와 수사사건의 수리 유형·절차·기록관리 기준을 통일하여 개청일부터 일관된 사건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4조(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): 입건전조사사건으로 수리해야 하는 민원·수사의뢰·범죄첩보·검사의 수사요청 등의 사유를 정함
- 제5조(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):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의 대상·확인사항·기록 및 전산처리 절차를 정함
- 제6조(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): 입건전조사사건을 입건·종결·중지·이송·공람종결하는 사유와 기록 편철 절차를 정함
- 제7조(불입건 결정 통지): 불입건 결정 통지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8조(수사사건의 수리 사유): 인지·고소·고발·자수·사건 이송·송치·재기·검사 통보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함
- 제9조(수사사건의 수리 절차):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에 따라 수리하는 수사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도록 함
- 제10조(수리한 수사사건의 전산입력 등):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
- 제11조(수리 전 점검과 조치):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제3호·제4호 또는 제8조제4호·제5호·제6호·제8호·제9호에 따라 수사사건 또는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함
- 제12조(수리에 관한 지휘·감독):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절차가 종료된 수사사건이나 입건전조사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 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하도록 함
- 제13조(사건의 단위): 사건의 단위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14조(담당사건의 파악 등):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 및 입건전조사사건과 기록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 ·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· 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사건 누락 · 중복 수리와 관할 오류를 예방하고, 전산기록과 실물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 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수사의 기본원칙(제15조부터 제23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새 수사기관의 권한행사 기준과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· 구제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5조(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): 불구속 ·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하도록 함
- 제16조(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): 강제수사의 비례성과 영장 신청 시 구체적 소명 의무를 정함
- 제17조(수사기밀의 유지): 수사관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도록 함
- 제18조(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):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에 관한 대상 · 기준 · 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19조(수사관의 회피): 수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도록 함
- 제20조(구제신청의 고지): 수사과정의 위법 ·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와 안내 방법을 정함

- 제21조(수사 진행상황의 통지): 고소인 · 고발인 ·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시기 · 내용 · 예외를 정함
- 제22조(고소인등의 이의제기): 수사지연 · 편파수사 등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와 처리 절차를 정함
- 제23조(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): 지명수배 · 지명통보의 등록 · 해제와 자료관리 절차를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 ·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· 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불구속 · 임의수사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호를 실무에 정착시키고 수사지연 · 편파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(제24조부터 제41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고소 · 고발 · 자수부터 조사 · 진술기록 · 영상녹화 · 자료수집까지 임의 수사의 표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24조(고소 · 고발 · 자수): 고소 · 고발 · 자수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기본 절차를 정함
- 제25조(필요적 입건사유):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사건으로 입건해야 하는 사유를 정함
- 제26조(출석요구):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 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

-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요구서(피의자)를 발송하도록 함
- 제27조(임의동행):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함
 - 제28조(신뢰관계인의 동석):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 - 제29조(조서와 진술서):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(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도록 함
 - 제30조(조사 및 의견청취):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 - 제31조(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):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 - 제32조(수사과정의 기록):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 - 제33조(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):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·녹음 요건, 고지, 동의 및 중단 절차를 정함
 - 제34조(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): 수사관은 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
 - 제35조(영상녹화물·녹음물의 제작 등): 영상녹화물·녹음물의 제작·봉인·보관·복사 등 관리 절차를 정함
 - 제36조(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):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 - 제37조(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): 수사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하도록 함
 - 제38조(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):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에

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
- 제39조(감정의 위촉):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도록 함
- 제40조(실황조사): 수사관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함
- 제41조(수사의 촉탁): 수사관이 소속된 청이 아닌 다른 청의 수사관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르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진술과 증거 수집의 적법성·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체포·구속(제42조부터 제61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·구속의 신청·집행·사후조치 기준을 엄격하고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42조(체포영장의 신청): 체포영장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정함
- 제43조(체포영장의 재신청): 체포영장의 재신청의 요건·서식·접수 및

처리 절차를 정함

- 제44조(체포영장의 집행): 체포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르도록 함
- 제45조(체포의 통지): 체포의 통지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46조(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):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
- 제47조(체포영장의 반환): 체포영장의 반환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48조(긴급체포): 긴급체포의 요건·승인·기록 및 영장 신청 절차를 정함
- 제49조(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):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50조(현행범인체포):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51조(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):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,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함
- 제52조(구속영장의 신청 등):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사항을 정함
- 제53조(구속 전 피의자 심문):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54조(준용규정): 구속의 경우 구속영장의 재신청, 구속영장의 집행, 구속의 통지, 구속영장의 반환 등에 관해서는 제4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함
- 제55조(체포·구속영장 등본의 교부):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·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

- 제56조(체포·구속적부심사): 체포·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57조(피의자 접견 등 금지): 피의자 접견 등 금지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58조(감정유치장 신청 등): 수사관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59조(체포와 구속의 취소): 체포와 구속의 취소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60조(구속의 집행정지): 수사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르도록 함
- 제61조(구속 피의자의 석방): 수사관이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,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영장주의와 비례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신병관리 과정의 절차 누락을 예방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압수·수색·검증(제62조부터 제77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압수·수색·검증과 전자정보·금융정보 처리의 범위 및 압수물 관리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62조(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의 신청): 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의 신청서, 대상·범위 및 소명자료를 정함
- 제63조(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의 집행): 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의 집행계획, 참여권 보장, 목록 교부 및 보고 절차를 정함
- 제64조(준용규정): 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의 경우 영장의 재신청 및 반환 등에 관해서는 제43조,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함
- 제65조(임의 제출 등): 수사관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99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도록 함
- 제66조(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): 수사관이 법 제216조 및 제217조의 압수·수색·검증을 하는 경우 제63조제5항, 제6항 및 제7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
- 제67조(압수·수색·검증의 영상녹화 열람·복사 등): 압수·수색·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열람·복사 절차를 정함
- 제68조(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):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69조(압수물의 위탁보관): 압수물의 위탁보관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70조(압수물의 폐기):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
- 제71조(압수물의 대가보관):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

- 제72조(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): 수사관은 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
- 제73조(전자정보의 압수·수색·검증): 전자정보 압수·수색의 선별·복제·출력, 무관정보 삭제 및 참여권 보장 절차를 정함
- 제74조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)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75조(동의에 의한 금융 거래정보등의 요구): 동의에 의한 금융 거래 정보등의 요구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76조(금융 거래정보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): 금융 거래정보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77조(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):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4에 따른 감정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2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증거수집의 적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사생활·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통신수사 및 그 밖의 수사(제78조부터 제93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통신비밀을 제한하는 수사와 증거보전·증인신문·수사개시 통보 절차에 명확한 통제기준을 둘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78조(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):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 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요건과 서식을 정함
- 제79조(긴급통신제한조치): 수사관이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긴급검열·감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80조(통신제한조치의 집행): 수사관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르도록 함
- 제81조(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):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82조(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):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허가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함
- 제83조(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):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의 요건·서식·접수 및 처리 절차를 정함
- 제84조(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): 수사관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85조(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):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86조(송·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·수색·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): 송·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·수색·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87조(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): 수사관이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2조의2제1 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기통신

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전기통신
보관 등 승인 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
- 제88조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):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
제공요청의 요건과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89조(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): 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에
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90조(증거보전의 신청): 수사관은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
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91조(증인신문의 신청): 수사관은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
신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
따르도록 함
- 제92조(영장심의위원회): 수사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
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영장심의위원회 규칙」
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
- 제93조(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): 공무원 등에 대한
수사개시·종결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 절차를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
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통신수사의 법적 요건과 사후통지를 체계화하고 중요 수사행위의 책임성과
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
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수사종결·송치·불송치(제94조부터 제107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사건 종결의 유형과 송치·불송치 기록, 통지·이의신청·열람등사 절차를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94조(사건의 결정): 공소청송치·법원송치·불송치·수사중지·이송 등 사건의 결정 유형과 사유를 정함
- 제95조(결정의 단위): 결정의 단위의 사유·기준·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함
- 제96조(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): 수사관은 하나의 사건에 공소청송치,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하도록 함
- 제97조(승인 등 절차): 수사관은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함
- 제98조(수사 결과의 통지): 수사결과를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·피의자 등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예외를 정함
- 제99조(공소청송치 결정):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공소청송치 결정과 기록 작성 절차를 정함
- 제100조(송치 서류):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도록 함
- 제101조(추가송부):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,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,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4호서식의 추가송부서를 첨부하도록 함
- 제102조(법원송치 결정):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송부하도록 함
- 제103조(불송치 결정): 혐의없음·죄가안됨·공소권없음·각하 등 불송치 결정의 사유를 정함
- 제104조(불송치 서류):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5호서식에 따르며,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을

준용하도록 함

- 제105조(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):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의 사유·기준·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함
- 제106조(고소인등의 이의신청):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·방법과 사건 송치 절차를 정함
- 제107조(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·등사): 고소인 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·등사 신청과 허가·제한 절차를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복·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수사중지 및 이송(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수사중지와 재개, 소재수사, 이의제기 및 관할기관 이송의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08조(수사중지 결정): 피의자·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수사중지 결정을 정함
- 제109조(수사중지 결정의 유의사항): 수사중지 결정의 유의사항의 사유·기준·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함
- 제110조(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·지휘부 등):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

수사관이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소재수사 요청부를 작성하도록 함

- 제111조(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):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심사·통지 절차를 정함
- 제112조(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):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
- 제113조(이송 결정): 관할·범죄특성·병합 필요 등을 고려한 사건 이송 결정과 기록 인계 절차를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장기 미제·소재불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건의 적정한 관할 배분을 확보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보완수사·재수사·시정조치 요구(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공소청의 보완수사·재수사·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와 결과 통보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14조(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):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실시, 사건 처리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

- 제115조(재수사 결과의 처리): 검사의 재수사요구에 따른 재수사와 결과 처리 절차를 정함
- 제116조(시정조치요구의 이행):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와 사건송치 요구에 대한 이행·통보 절차를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수사와 공소 기능 간 견제·협력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위법·부당한 수사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수사기관 간 협력(제117조부터 제128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관할이 맞닿는 다른 수사기관·공소청·공수처와의 협력·이첩·의견교환 절차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17조(협력의 원칙과 방식): 수사기관 간 상호 존중·신뢰에 기초한 협력 원칙과 서면·전자적 협력 방식을 정함
- 제118조(인지 통보 사건의 접수 및 인지 통보 요청): 인지 통보 사건의 접수 및 인지 통보 요청의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기록 절차를 정함
- 제119조(인지 통보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수사개시 회신):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지 통보를 한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인지 통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서에 따르도록 함

- 제120조(이첩 요청): 중수청법 제43조제3항 및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02호서식의 이첩 요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121조(사건 이첩): 중수청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사건 이첩서에 따르도록 함
- 제122조(중요사건 협력 절차): 중요사건의 수사·공소유지에 필요한 공소청과의 협력 절차를 정함
- 제123조(검사와의 협의):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124조(수사관의 의견요청): 수사관의 의견요청에 관한 대상·기준·절차와 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정함
- 제125조(소재확인에 관한 협력):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르도록 함
- 제126조(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):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정함
- 제127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): 공수처의 이첩요청과 사건 이첩·재이첩 등 처리 절차를 정함
- 제128조(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):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관련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재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기관 간 중복수사와 사건 공백을 줄이고 중요사건의 신속·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몰수·피해자 보호·징계 및 기록관리(제129조부터 제137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범죄수익 보전, 피해자·신고자 보호, 수사관 통제와 사건기록 관리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29조(몰수보전 등의 신청):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·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몰수·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130조(추정보전의 신청): 수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추정보전 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- 제131조(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): 피해자 정보보호, 권리·지원제도 안내 및 신변안전 조치를 정함
- 제132조(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): 공익신고자·범죄신고자의 보호·지원과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정함
- 제133조(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): 공소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검토와 처리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
- 제134조(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): 공소청의 직무배제 요구에 대한 처리기한과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
- 제135조(장부와 비치서류):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
- 제136조(범죄통계원표):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 하도록 함

- 제137조(수사서류 열람·복사): 피의자,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수사서류의 열람·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수사서류 열람·복사 신청서에 따르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과 피해자 안전을 높이고 조직 내부의 책임성과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수사심의위원회(제138조부터 제145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중수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적·공정한 운영을 위한 실무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38조(위원장 호선과 회의의 구성): 매 회의 위원장 호선과 무작위 추첨을 통한 위원회 회의 구성 절차를 정함
- 제139조(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): 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·등록·보안·배부 절차를 정함
- 제140조(수사심의신청서): 중수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따르도록 함
- 제141조(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): 안건분류·추첨·자료제출·회의진행 및 전자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
- 제142조(의결서 및 심의서류): 중수청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

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222호서식에 따르도록 함

- 제143조(보존기간): 사건 관련 의결서·심의서류와 운영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함
- 제144조(수사심의 결과의 통지): 중수청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223호서식에 따르도록 함
- 제145조(서약서): 중수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224호서식에 따르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·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·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위원 선정·보고·의결·보존·통지의 투명성을 높여 외부 통제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손실보상 및 보칙(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수사 과정의 적법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서식·준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규칙의 집행 기반을 완성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제146조(손실보상의 청구):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 사용하는 서식을 정함
- 제147조(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): 손실보상금 지급 승인·각하·기각 결정의 통지 서식을 정함
- 제148조(적용법령과 준용):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건사무에 검찰 사건사무규칙, 경찰 수사규칙 등을 제한적으로 준용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주요 논의사항은 없으며, 관계기관 의견조회 ·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· 반영할 예정임

라. 입법효과

- 손실보상 청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규정 사항에 대한 일관된 실무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중수청법, 형사소송법, 공소청법,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사건사무 규정을 참고함

□ 시행일 · 적용례 및 경과조치(부칙 제1조부터 제14조까지)

가. 제정 이유

- 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일과 개청 시점에 맞추어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, 이송사건 · 종전 수사행위 · 기간 · 서식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부칙 제1조(시행일): 2026년 10월 2일을 원칙적 시행일로 하고 일부 협력 · 전자관리 · 녹음 · 영상녹화 규정의 단계적 시행 일을 정함
- 부칙 제2조(일반적 적용례): 시행 후 수리하는 사건과 시행 당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송되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3조(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):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4조(구제신청 절차 안내 및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): 구제신청 절차 안내와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5조(압수 · 수색 · 검증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): 압수 · 수색 · 검증 영상녹화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5조(압수 · 수색 · 검증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): 압수 · 수색 · 검증 영상녹화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
- 부칙 제6조(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관한 적용례): 피의자신문 등에 있어 녹음, 녹음물, 녹음물 송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7조(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: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8조(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): 재수사요구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9조(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): 수사지연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10조(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·등사에 관한 적용례): 수사 관계 기록 열람·등사 규정의 적용례를 정함
- 부칙 제11조(이송사건의 수리 및 사건번호): 이송사건의 수리일·새 사건번호·연계번호·인계자료 및 처리기한 확인 기준을 정함
- 부칙 제12조(종전 수사행위 등의 효력): 시행 전 적법한 수사행위·영장·통신조치·압수물 처분·통지·서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
- 부칙 제13조(기간의 계산):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간의 계속 계산과 새 법률의 적용요건·기산점 기록 기준을 정함
- 부칙 제14조(종전 서류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: 종전 사건기록·장부·서식의 효력과 시행 후 새 서식 사용 및 권리안내 보완 기준을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전자적 사건관리·녹음·영상녹화 관련 규정의 단계적 시행 및 종전 사건의 이관·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

라. 입법효과

- 개청일 전후 사건처리의 공백과 기록 단절을 방지하고, 시스템·설비 준비상황에 맞춘 안정적인 제도 이행이 가능해짐.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수사준칙 개정령의 적용례·경과조치와 연계하여 검토함